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5 선고 2022가단60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D

변 론 종 결 2022. 6. 14.

판 결 선 고 2022. 7. 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,902,626원 및 그 중 48,605,395원에 대하여 2021. 5. 1.부터 2022. 4. 17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 거

가. 피고 주식회사 C :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나. 피고 D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상근

별지